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1. 12. 23(금)

건설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이수완 의원외 6인

나. 발의일자 : 2011년 12월 2일

다. 회부일자 : 2011년 12월 12일

라. 상정일자 : 2011년 12월 19일

(제3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이수완 의원)

가. 제안이유

-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제20조에 의거하여,

- 충청북도 내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 등을 명확하게 하고, 적정한 대행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과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제3조)
-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기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선정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 (안 부칙 제2조)

3. 검토보고 요지

(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 나 시 찬)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 도내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자율경쟁유도 및 독점운영 방지를 위해 국토해양부에서도 여러 차례 조례제정을 촉구한바 있으며,
- 발급대행자의 지정 및 관리 등의 합리적 개선으로 도민부담완

화 및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충족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본 조례의 제정으로 인하여 도지사의 사무집행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 또는 사전의 적극적인 개입을 규정하는 조항이 없기에 내용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 업무관련부서인 균형건설국 교통물류과와 충분한 업무협약이 이루어졌으며 입법예고(2011.11.10 ~ 11.29)를 통하여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쳤음.
- 「자동차관리법」 제20조에서 위임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자의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정책의도를 명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해석상의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선택하였으며,
- 조문의 표현은 중복되지 않고 간결하게 경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문상호간에 모순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을 발견하지 못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라. 검토의견

- 충청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바
- 「지정방법을 시·군별로 둘 이상의 발급대행자를 지정토록 하여 독점운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해당 시·군의 여건을 고려

하여 공개모집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1개의 발급대행자 지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 대행기간을 3년으로 지정하여, 선정기준에 적합 시 연장가능하도록 하며,
- 대행자의 선정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업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시키고, 가격경쟁력과 투명성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조례 제 호

충청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지정 방법 및 대행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를 선정하는 공개모집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지역여건, 자동차대수, 대행자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군별로 둘 이상의 대행자를 지정한다. 다만,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1개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가 대행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는 대행기간 만료일 3개월 이전까지 지정신청 절차, 지정방법, 대행기간, 사업구역, 지정대상자 수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다)가 관할구역 내의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업무를 직접 수행하고자 지정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대행자의 선정기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장비 등의 기준과 사업계획서,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등록 관청의 근접성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대행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4조(대행기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기간은 지정일부터 3년으로 하며, 대행자의 대행기간 연장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조에 위배되지 않는 한 연장할 수 있다.

제5조(대행자의 변경신고) ① 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상호(명칭)가 변경된 경우
2. 대행자의 성명이 개명(改名)되거나, 대행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3. 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또는 장비 규격이 변경된 경우
4.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5.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신고사항 중 대행자지정서 기재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이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행자의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되어 있는 대행자의 대행기간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3년까지는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관련법령 발췌

□ 자동차관리법

제20조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9조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등의 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③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

호판의 발급 및 봉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용 철형(凸形)을 관리하는 경우 도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유출(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0조제2항에 따른 시설·장비 등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용 철형을 도난 당하거나 유출한 경우
 4.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5.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6.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收受)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7. 자산상태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8. 등록번호판의 발급 또는 봉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9. 국토해양부장관이 등록번호판의 규격·재질·색상 등 제식(制式)에 관하여 고시한 기준에 위반되게 제작·발급한 경우
 10.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지정신청 등) 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장의 위치·시설개요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역별 분포와 이용자의 편의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평면도와 시설의 명세서
2. 사업장의 용지 및 사무실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하는 때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확보하여야 하는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3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춘 때에는 업무개시일 및 사업구역을 정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지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기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등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업무의 폐지신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폐지예정일 30일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등의 신분증)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및 그 종사원은 등록번호판발급업무를 대행하는 때에는 별표 4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신분증을 달아야 한다.

제12조(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 ①등록번호판의 발급 및 봉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정하는 등록번호판발급 및 봉인수수료(등록번호판의 가격 및 부착비용을 포함하며, 이하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등록번호판의 발급 및 봉인을 받는 자 또는 소비자관련단체가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금액의 산출근거제시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에 관한 명확한 산출내역을 명시하여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구역의 조정) 시·도지사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업무량, 지역주민의 편의 및 사업구역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사업구역외에 해당 사업구역과 인접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서 등록번호판발급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접한 시·도의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사업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